



## 대구대학교와 육군 3사관학교간의 학술교류협정서



대구대학교와 육군 3사관학교(이하 "양교"라 한다)는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양교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를 통해 학문적 발전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교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대구대학교와 육군 3사관학교간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학술교류 및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내용) 양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1. 양교는 연구 및 교육의 향상을 목표로 포괄적인 학술교류에 협력한다.
2. 양교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3. 양교는 학술행사(연구소 세미나 등)개최 시 관련분야 교수를 상호 초청한다.
4. 양교는 학술정보, 학술자료, 학술 정기간행물을 상호 교환한다.
5. 3사관학교는 대구대학교 대학원과정(특수대학원 포함) 학생모집과 관련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6. 양교는 당해 학교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등 시설물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7. 양교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학생·생도교류를 활성화한다(축제, 동아리 행사, 학술행사 병영체험, 체육행사 등)
8. 양교는 양교 간부의 유대강화와 친목도모를 위해 매년 번갈아 가며 체육행사를 개최한다.
9. 이외에도 양교는 공동 관심분야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안에 대하여 긴밀히 상호 협력한다.

제3조(군·학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의 협정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양교의 관계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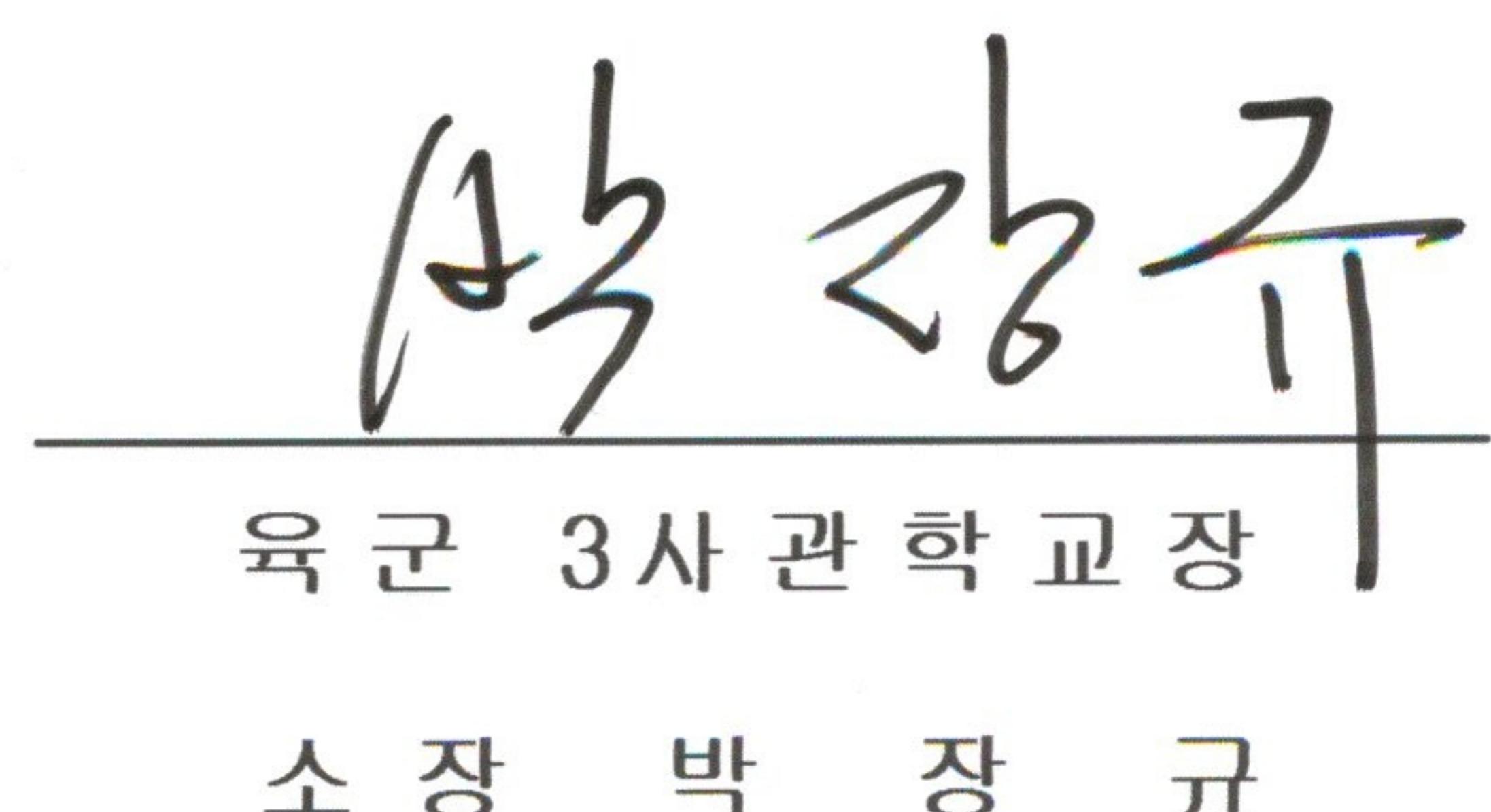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본 협정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며,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교의 대표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제5조(협정서의 효력) 1. 이 협정서는 양교의 학교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일방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양교의 협의에 따라 협정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2003. 2. 15



윤덕홍  
대구대학교총장



박상규  
육군 3사관 학교장